

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안내

■ 공급대상

1.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2.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자
3.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
[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(분양권 등 포함)이 없어야 하며,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]
4. 혼인 (재혼 포함)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
※ 1인 가구 : 혼인 중이 아니면서(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) 미혼인 자녀(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도 없는 신청자.
- 1인 가구(단독세대) :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공급으로 청약 가능합니다.
→ 59A/B㎡ 타입만 청약 가능
- 1인 가구(단독세대가 아닌 자) :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공급으로 청약 가능합니다.
5.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의 160% 이하인 자
- 자산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 (3억 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
6.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,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

■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

- 소득세는 「소득세법」제19조(사업소득) 또는 제20조(근로소득)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,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-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개년 납부실적을 의미하며,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. 단,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,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.
- 청약자가 근로소득(사업소득)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 합니다.
- 미혼인 자녀는 입양을 포함하여, 청약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.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당첨자 선정기준

① 소득 ▶ ② 거주지역 ▶ ③ 추첨

당첨자 선정방법

※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용인시) 우선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.

1	우선공급 50%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
2	일반공급 20%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% 이하인 자
3	추첨공급 30% : 공급 후 남은 물량(30%)은 ①, ② 낙첨자 + 추첨제 청약자(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자, 1인 가구)에게 공급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